

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8-제50호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일자 : 2008. 5. 8.

제출자 : 사천시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문화예술회관의 냉·난방시설이 보완됨에 따라 사용료 중 보조난방, 소공연장, 전시실 사용료를 조정하고, 문화예술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활동과 무관한 대관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시설사용료 중, 냉·난방사용료 조정(안 제5조 별표 1)
- 나. 시설사용료 납부방법 중, 조례와 규칙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개정함
(안 제5조)
- 나. 문화예술활동과 무관한 경우 대관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함
(안 제6조)

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담당관실

라. 기 타

1)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08. 3. 25 ~ 4. 14(20일간)

나) 예고방법 : 일간신문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공고

다) 제출의견 : 없음

3) 규제심사

가) 일 시 : 2008. 3. 28(제9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)

나) 심의결과 : 원안의결

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”를 “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”로 한다.

제3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, 제13조 중 “각 호의 1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각 호의 1과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와”로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”를 “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6조 중 제3호 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특정 제품의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4. 특정 종교의 포교 및 노동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
제11조 중 “사용기간중”을 “사용기간 중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03. 6. 9> (현행)

사천시문화예술회관 사용료

1. 시설 사용료

(단 위 : 원)

구 분	단 위	사 용 료		비 고
		공 연	행 사	
대 공 연 장	오전	100,000	11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일 사용료는 오전·오후·야간의 합산금액으로 함 ○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%를 가산함 ○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%를 징수한다 ○ 익일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2:00이후 사용시는 야간 사용료의 50%를 징수함 ○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0분미만 초과 : 당해사용료의 20% - 30분이상 60분미만 초과 : 당해 사용료의 50% - 60분이상 초과 : 다음회 사용료 전액(단,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)
	오후	120,000	132,000	
	야간	150,000	165,000	
소 공 연 장	오전	15,000	15,000	
	오후	20,000	20,000	
	야간	25,000	25,000	
전시실	1일/m ² 당	120		

2. 부대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		단 위	사용료	비 고
피아노	대 형		1회공연	20,000	○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용료의 50%를 징수한다 ○ 1회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○ 부대설비 사용은 기간에 상관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○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- 30분미만 초과 : 당해 사용료 의 20% - 30분이상60분미만 : 당해 사용료의 50% - 60분이상 초과 : 다음 회 사용료 전액 (단,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사용료 전액) ※ 음향기본(마이크2대) 마이크 추가시 · 유선마이크 개당 2,000원 · 무선마이크 개당 4,000원
	소 형		1회공연	10,000	
슬라이딩 무대			1회작동	20,000	
무 대 조 명	대 공 연 장	종 합 조 보 조 명	1회공연	30,000	
		핀스포트	1회공연	20,000	
		라이트	1회공연	10,000	
	소공연장		1회공연	20,000	
무 대 연 습 실			오 전	10,000	
			오 후	15,000	
			야 간	20,000	
영사기(35m/m)			1회공연	15,000	
냉 · 난 방	대공 연장	냉 방	1회공연	연료사용 금액×10%가산	
		난 방			
	소공 연장	냉 방	1회전시	실사용액에서 10%가산	
		난 방			
전 시 실	냉 방	1회전시	실사용액에서 10%가산		
	난 방				
무대 음향	음향기본 (마이크2대)		1회공연	10,000	
	음향반사판		1회공연	20,000	
	릴 테이프		1회공연	30,000	
	오디오테이프 (CD, DAT 등 포함)		1회공연	10,000	

3. 기타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	단 위	사용료	비 고
중계방송	TV	1회	30,000	
	라디오	1회	20,000	
의상 및 대·소 도구		1회	취득가액 의 5%	
빔 프로젝트		1회	20,000	
고 무 판		1회	30,000	사용자 조건
드 라이 아 이 스		1회/1대	20,000	재료비 사용자 부담
퍼 크 머 신		1회/1대	10,000	
덧 마 루		1회	20,000	사용자 조건

[별표 1] (개정안)

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(제5조 관련)

1. 시설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단 위	사 용 료		비 고
		공 연	행 사	
대 공 연 장	오전	100,000	11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일 사용료는 오전·오후·야간의 합산금액으로 함 ○ 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%를 가산함 ○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%를 징수한다 ○ 익일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해 22:00이후 사용시는 야간 사용료의 50%를 징수함 ○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0분미만 초과 : 당해사용료의 20% - 30분이상 60분미만 초과 : 당해 사용료의 50% - 60분이상 초과 : 다음회 사용료 전액(단,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)
	오후	120,000	132,000	
	야간	150,000	165,000	
소 공 연 장	오전	15,000	15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0분미만 초과 : 당해사용료의 20% - 30분이상 60분미만 초과 : 당해 사용료의 50% - 60분이상 초과 : 다음회 사용료 전액(단,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 사용료 전액)
	오후	20,000	20,000	
	야간	25,000	25,000	
전시실	1일/m ² 당	120		

2. 부대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	단 위	사용료	비 고
피아노	대 형	1회공연	2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는 당해 사용료의 50%를 징수한다 ○ 1회라 함은 오전, 오후, 야간 중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○ 부대설비 사용은 기간에 상관 없이 1회 사용은 하나의 공연으로 본다 ○ 초과시간 사용료 가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0분미만 초과 : 당해 사용료 의 20% - 30분이상60분미만 : 당해 사용료의 50% - 60분이상 초과 : 다음 회 사용료 전액 (단, 야간시간 초과시는 당해사용료 전액)
	소 형	1회공연	10,000	
슬라이딩 무대		1회작동	20,000	
무 대 조 명	대 공 연 장	중 합 조 명	1회공연 30,000	
		보 통 조 명	1회공연 20,000	
		핀스포트 라이트	1회공연 10,000	
	소공연장	1회공연 20,000		
무 대 연 습 실		오 전	10,000	
		오 후	15,000	
		야 간	20,000	
영사기(35m/m)		1회공연	15,000	
냉 · 난 방	대공 연장	냉 방	1회공연 연료사용 금액×10%가산	
		난 방		
		보조난방	1회공연 40,000	
	소공 연장	냉 방	1회공연 25,000	
		난 방		
	전 시 실	냉 방	1일 전시 30,000	
난 방				
무대 음향	음향기본 (마이크2대)	1회공연	10,000	※ 음향기본(마이크2대) 마이크 추가시 · 유선마이크 개당 2,000원 · 무선마이크 개당 4,000원
	음향반사판	1회공연	20,000	
	릴 테이프	1회공연	30,000	
	오디오테이프 (CD, DAT 등 포함)	1회공연	10,000	

3. 기타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 분		단 위	사용료	비 고
중계방송	TV	1회	30,000	
	라디오	1회	20,000	
의상 및 대·소 도구		1회	취득가액 의 5%	
빔 프로젝트		1회	20,000	
고 무 판		1회	30,000	사용자 조건
드 라이 아 이 스		1회/1대	20,000	재료비 사용자 부담
퍼 크 머 신		1회/1대	10,000	
덧 마 루		1회	20,000	사용자 조건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명 <u>사천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</u>	제명 <u>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</u>
제3조(사용허가) 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회관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 제1호 내지 제4호(생략)	제3조(사용허가) -----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-----.
제5조(사용기간 및 사용료) ①공연장 및 부대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하며,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. ② ~ ③ (생략) ④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.	제5조(사용기간 및 사용료) ①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와</u> -----, -----. ② ~ ③(현행과 같음) ④회관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----- -----.
제6조(사용허가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. (생략) 2. (생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6조(사용허가의 제한) 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특정 제품의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. 특정 종교의 포교 및 노동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제7조(허가의 취소 등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제1호 내지 제7호(생략)	제7조(허가의 취소 등) 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----- 제1호 내지 제7호(현행과 같음)
제9조(사용료의 반환)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 제1호 내지 제3호(생략)	제9조(사용료의 반환) 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----- 제1호 내지 제3호(현행과 같음)
제11조(손해배상) ①사용자는 <u>사용기간중</u>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	제11조(손해배상) ①----- <u>사용기간 중</u>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<p>②(생략)</p> <p>제13조(입장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[별표 중] 시설사용료 중 비고란의 <u>토요일 오후</u>, 일요일 및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%를 가산함</p> <p><신설></p> <p>부대시설 사용료 중 <u>소공연장 냉·난방 : 1회 공연 당 연료 사용금액×10% 가산</u></p> <p>부대시설 사용료 중 <u>부대시설 전시실 냉·난방 : 1회 전시 당 실사용액에서 10% 가산</u></p> <p>붙임 : 별표 1</p> <p>붙임 : 별지 제1호서식</p>	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입장의 제한) --각 호의 어느 하나----- ----- -----.</p> <p>[별표 중] <u>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</u>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%를 가산함</p> <p>부대시설 사용료 중 <u>대공연장 보조난방 : 1회 공연 당 40,000원</u></p> <p>부대시설 사용료 중 <u>소공연장 냉·난방 : 1회 공연 당 25,000원</u></p> <p>부대시설 사용료 중 <u>전시실 냉·난방 : 1일 전시 당 30,000원</u></p> <p>붙임 : 별표 1</p> <p>붙임 : 별지 제1호서식</p>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